

동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04.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4. 9.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

가. 상정사유

최근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있어 행정구역 조정필요.

나. 주요요지

0 아현동(아현3동) 33필지 1,216.4㎡를 공덕동(공덕제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조정 필요

0 성산동(성산제2동) 33필지 13,864㎡를 상암동(상암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조정 필요

0 구수동(신수동) 1필지 2,907.1㎡를 신수동(신수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신·구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조정 필요

0 신정동(상수동) 2필지 8,897.3㎡를 신정동(신수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현석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조정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0 동 건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에 걸쳐있어 생활권 및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변경되는 내용>

0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아현동(아현제3동)649-1외 32필지 1,216.4㎡(약 368평)를 공덕동(공덕제2동)으로, 상암택지개발사업구역인 성산동(성산2동)490-1외 32필지13,864㎡(약 4,194평)를 상암동으로, 신·구수재건축사업구역인 구수동(신수동)107번지 2,907.1㎡(약 879평)를 신수동으로, 현석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행정동이 상수동인 신정동 151, 152번지 8,897.3㎡를 행정동이 신수동인 신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함.

<검토의견>

0 동 건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 및 법정동에 걸쳐있어 생활권 및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주민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행정동 변경시 법정동을 동시에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주민들의 의견, 도로, 인구 등을 종합해서 변경 해야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洞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 명 :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 경계변경

가. 법정동변경 : 아현제3동 일부 ⇒ 공덕제2동, 성산제2동 일부 ⇒ 상암동

구수동 일부 ⇒ 신수동

나. 행정동변경 : 상수동 일부 ⇒ 신수동

2. 상정사유

- 최근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있어 행정구역 조정 필요

3. 주요요지

- 아현동(아현제3동) 33필지 1,216.4㎡를 공덕동(공덕제2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조정 필요
- 성산동(성산제2동) 33필지 13,864㎡를 상암동(상암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조정 필요
- 구수동(신수동) 1필지 2,907.1㎡를 신수동(신수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신·구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조정 필요
- 신정동(상수동) 2필지 8,897.3㎡를 신정동(신수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 현석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조정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8·31>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나. 주요추진사항

-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방침 제207호(2004. 3. 5), 구청장방침 제865호(2004. 7.30)
-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서울시 사전협의결과(타당) 통보
서울시 행정과-7605(2004. 7. 7), 서울시 행정과-8781(2004. 8. 3)

- 첨부 : 1. 행정구역변경 대상지역 현황1부.
2. 불합리한 행정구역 필지별 조서 각1부
3.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각 1부.

첨부 1

행정구역변경 대상지역 현황

▣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

- 법정동 변경

변경구분	연계구분	면적(㎡)	세대	인구수	연계구분	면적(㎡)	세대	인구수	연계구분	면적(㎡)	세대	인구수
편입되는 지역	아현동 (아현제3동)	0.20	3,873	9,193	-0.001216				0.198784	3,873	9,193	
편입받는 지역	공덕동 (공덕제2동)	0.42	3,848	9,533	+0.001216				0.421216	3,848	9,533	
편입되는 지역	성산동 (성산제2동)	2.09	14,254	41,119	-0.013864				2.076136	14,254	41,119	
편입받는 지역	상암동 (상암동)	8.38	3,336	8,931	+0.013864				8.393864	3,336	8,931	
편입되는 지역	구수동 (신수동)	0.67	7,697	19,768					0.67	7,697	19,768	
편입받는 지역	신수동 (신수동)	0.67	7,697	19,768					0.67	7,697	19,768	

- 행정동 변경

변경구분	연계구분	면적(㎡)	세대	인구수	연계구분	면적(㎡)	세대	인구수	연계구분	면적(㎡)	세대	인구수
편입되는 지역	신정동 (상수동)	1.10	5,474	12,800	-0.008897				1.091103	5,474	12,800	
편입받는 지역	현석동 (신수동)	0.67	7,236	18,601	+0.008897	147	441		0.678897	7,677	19,042	

※ 면적, 세대, 인구수(2003.12.31기준) 행정동 기준임

▣ 경계조정 준비기준

- 1개의 단지가 2개동에 걸쳐지 않게 조정
-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내 관할구역 면적이 작은동을 큰 지역 관할동으로 편입하여 동별 행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현장 구별이 용이하도록 현재의 도로망, 아파트외벽 등을 고려하여 동경계를 조정

■ 발생원인 및 검토의견

- 아현동(아현제3동) 33필지 1,216.4㎡를 공덕동(공덕제2동)으로 편입
 -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시행자:삼성물산)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이 2개의 행정동(아현제3동, 공덕제2동) 및 2개의 법정동(아현동, 공덕동)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며 해당동, 공덕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의견수렴결과 면적이 작은 아현동 33필지를 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의견제출 되었음
- 성산동(성산제2동) 33필지 13,864㎡를 상암동(상암동)으로 편입
 - 상암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2개의 행정동(성산제2동, 상암동) 및 2개의 법정동(성산동, 상암동)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며 해당동, SH공사의 의견수렴결과 성산동 33필지를 상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의견제출 되었음
- 구수동(신수동) 1필지 2,907.1㎡를 신수동(신수동)으로 편입
 - 신·구수 재건축(시행자 : 주식회사 대원)사업으로 인하여 한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구수동, 신수동)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며 해당동, 재건축조합의 의견수렴결과 면적이 작은 구수동 1필지를 신수동으로 편입하는 의견제출 되었음
- 신정동(상수동) 2필지 8,897.3㎡를 신정동(신수동)으로 편입
 - 현석구역주택재개발(시행자:현대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대홈타운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동(상수동, 신수동) 및 2개의 법정동(신정동, 현석동)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며 해당동, 현석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의견수렴결과 면적이 작은 상수동 2필지를 신수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행정동만 변경요청하는 의견제출 되었음

첨부 2

불합리한 행정구역 필지별 조서

1. 아현동(아현제3동), 공덕동(공덕제2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편입되는지역
아현동 33필지 1,216.4m'

⇒

편입받는지역
공덕동 33필지 1,216.4m'

□ 지목별 조서

지목별	필지수	면적(m')	비고
계	33	1,216.4	
대지	19	1,032.3	
도로	14	184.1	

□ 필지별 조서

법정동명	지번	지목	면적(m')	비고
아현동	649-1	도로	33.7	
아현동	649-2	대	119.7	
아현동	649-3	대	86.3	
아현동	649-4	대	35.7	
아현동	649-5	대	43	
아현동	649-6	대	64.8	
아현동	649-7	도로	11.2	
아현동	649-8	도로	9.9	
아현동	649-9	도로	3	
아현동	649-10	도로	10.9	
아현동	649-11	도로	11.6	
아현동	649-12	도로	15.9	
아현동	649-13	대	53.9	
아현동	649-14	대	45.3	
아현동	649-15	대	45	
아현동	649-16	대	20.5	
아현동	649-17	대	19.2	
아현동	649-18	대	42.3	
아현동	649-19	대	56.9	
아현동	649-20	대	80	
아현동	649-21	도로	12.2	
아현동	649-22	도로	11.9	
아현동	649-23	도로	10.9	
아현동	649-24	도로	15.5	
아현동	649-25	도로	9.3	
아현동	649-26	도로	10.2	
아현동	649-27	도로	17.9	
아현동	649-28	대	63.5	
아현동	649-29	대	55.9	
아현동	649-30	대	55.5	
아현동	649-31	대	38.7	
아현동	649-32	대	46.3	
아현동	649-33	대	59.8	

2. 성산동(성산제2동), 상암동(상암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편입되는지역
성산동 33필지 13,864㎡

⇒

편입받는지역
상암동 33필지 13,864㎡

□ 지목별 조서

지목별	필지수	면적(㎡)		비 고
		공부	편입	
계	33	26,216	13,864	
대지	22	6,499	6,499	
답	4	4,555	3,086	
도로	4	1,396	1,396	
임야	2	13,577	2,879	
구거	1	189	4	

□ 필지별 조서

법정동명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공부	편입	
성산동	490-1	도로	140	140	
성산동	490-2	구	189	4	
성산동	491	도로	17	17	
성산동	491-1	답	1,677	432	
성산동	492-1	답	208	208	
성산동	492-3	대	9	9	
성산동	492-5	대	153	153	
성산동	492-6	대	132	132	
성산동	492-7	대	132	132	
성산동	492-8	대	132	132	
성산동	492-9	대	132	132	
성산동	492-10	대	225	225	
성산동	492-11	대	61	61	
성산동	492-12	답	43	43	
성산동	492-14	대	3	3	
성산동	492-19	도로	935	935	
성산동	492-20	답	2,627	2,403	

법정동명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공부	편입	
성산동	493	대	389	389	
성산동	493-2	대	180	180	
성산동	494-1	대	307	307	
성산동	494-5	대	668	668	
성산동	494-7	대	509	509	
성산동	494-8	대	774	774	
성산동	494-10	대	615	615	
성산동	494-11	대	417	417	
성산동	494-12	대	374	374	
성산동	494-13	대	364	364	
성산동	494-14	대	30	30	
성산동	494-15	대	50	50	
성산동	495	대	843	843	
성산동	495-1	도로	304	304	
성산동	산53-23	임	166	25	
성산동	산53-28	임	13,411	2,854	

3. 구수동(신수동), 신수동(신수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편입되는지역	⇒	편입받는지역
구수동 1필지 2,907.1㎡		신수동 1필지 2,907.1㎡

□ 필지별 조서

법정동명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구수동	107	대지	2,907.1	

4. 신정동(상수동), 신정동(신수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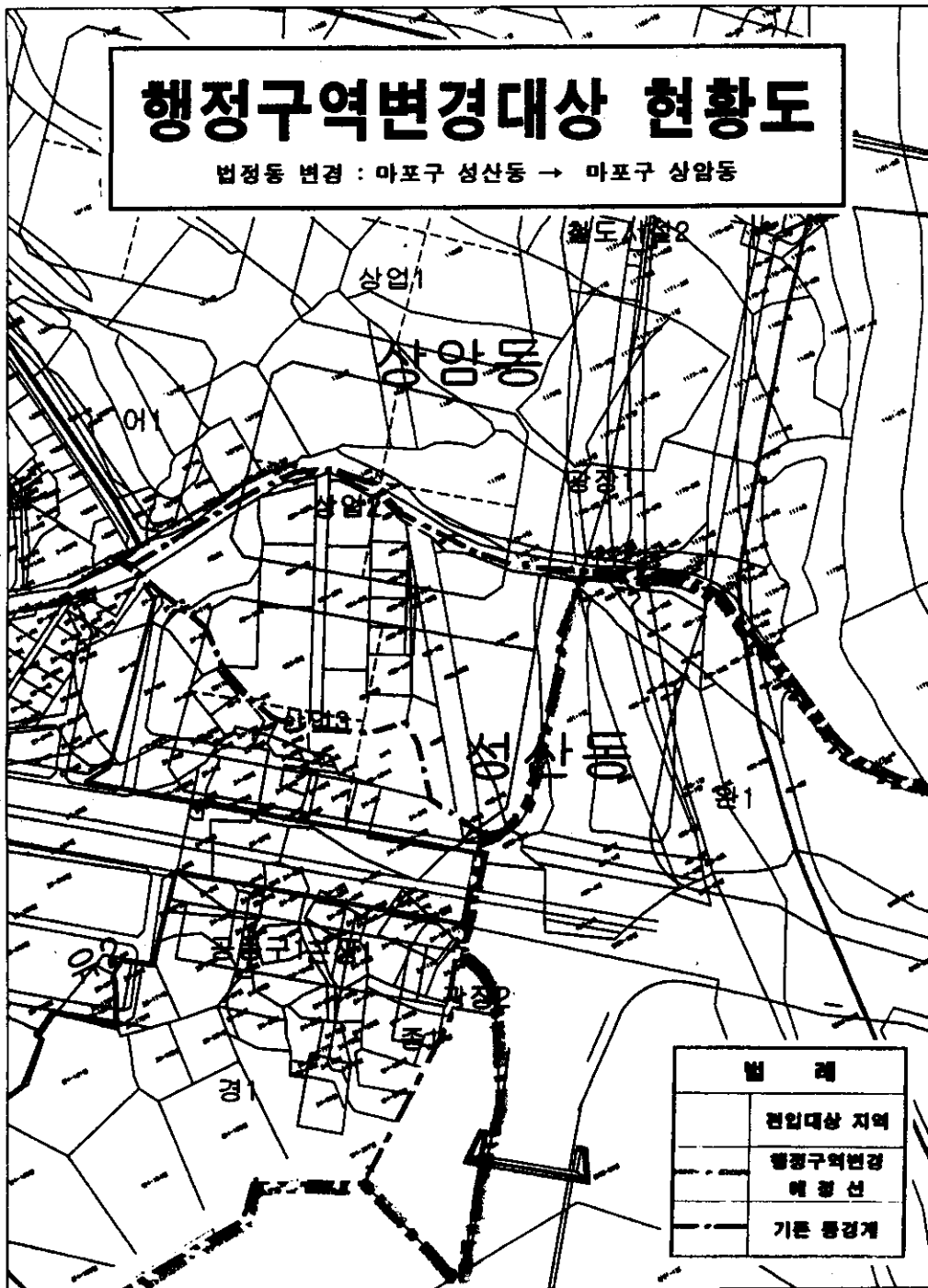
편입되는지역	⇒	편입받는지역
신정동 2필지 8,897.3㎡		신정동 2필지 8,897.3㎡

□ 필지별 조서

법정동명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신정동	151	공원	236.6	
신정동	152	대지	8,6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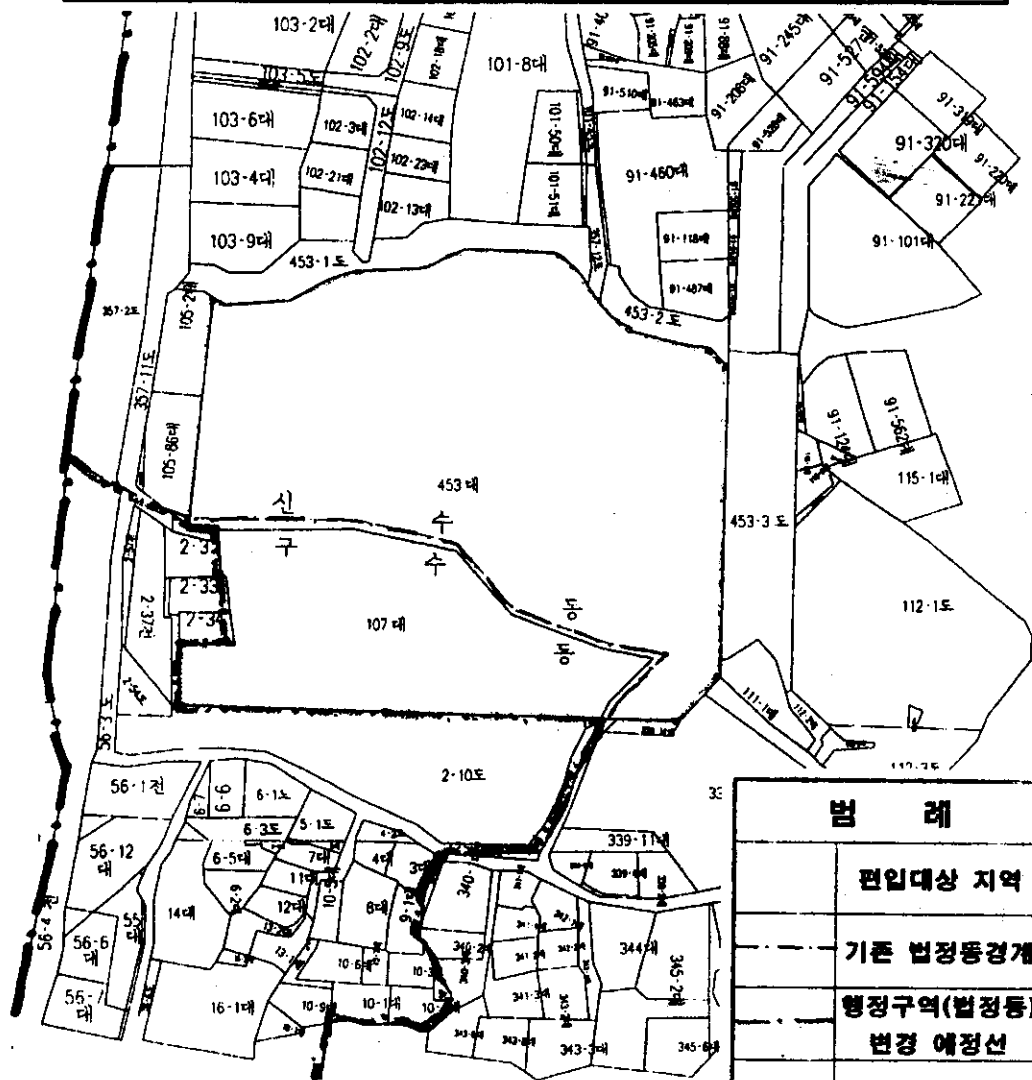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법정동 변경 : 마포구 성산동 → 마포구 상암동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법정동 변경 : 마포구 구수동 → 마포구 신수동



범례	
	편입대상 지역
-----	기존 법정동경계
-----	행정구역(법정동) 변경 예정선
-----	기존 동경계
-----	재건축 구역선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

행정동 변경 : 마포구 상수동 → 마포구 신수동

